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7522 제출연월일: 2025. 1. 15. 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"을 각각 "공정거래위원회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6항) 중 "심의위원회의 구성, 그 밖에"를 "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"로 하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36조 중 "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"을 "사람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재심의 중인 사 항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4제3항 및 4항에 따라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재심의 중인 사항은 제25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다.

제3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의제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4(상습법위반사업자 명	제25조의4(상습법위반사업자 명
단공표) ① <u>공정거래위원회 위</u>	단공표) ① <u>공정거래위원회는</u> -
<u>원장은</u>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	
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	
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에도 불	
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	
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	
래위원회로부터 경고, 제25조제	
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	
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	
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	
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	
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습법	
위반사업자"라 한다)의 명단을	
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의신	
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	
치는 제외한다.	
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	② 공정거래위원회는
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	
경우,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	
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	
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 사 업자에게 명단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야 하며,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 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.
- ⑤ (생략)
-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, 그 밖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3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24조의10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	
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	
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	
공무원으로 본다.	